

##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

[시행 2019. 4. 25] [총리령 제1535호, 2019. 4. 25, 타법개정]

### ◆ 개정이유

[제정]

#### ○ 제정이유

「식품위생법」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주요 기준을 정하고,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·광고행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, 식품 등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,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# ○ 주요내용

가.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(안 제5조제1항 및 별표 2)

식품 등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려는 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글루텐 함유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.

나. 식품 등의 표시방법(안 제5조제2항 및 별표 3)

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려는 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·포장에 표시해야 하고,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 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.

다.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절차(안 제12조)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자율심의기

구로 등록하려면 표시·광고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2명 이상의 상근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 및 운영 기준, 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.

〈법제처 제공〉

### ◆ 개정문

●총리령 제1535호(2019.4.25)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본문 생략]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8제1항제1호 중 “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”을 “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법 제32조제1항”을 “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의10제2호 중 “법 제6조”를 “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로 한다.

제51조의11제2항 중 “법 제6조”를 “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로 한다.

제51조의13제2항 중 “법 제6조”를 “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로 한다.

제52조를 삭제한다.

제6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제3호가목·나목 또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”을 “제4호가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별표 2의3 제6호 중 “법 제6조”를 “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로 한다.

별표 8 제1호가목(1) 및 (2)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법 제6조”를 “『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』 제4조”로 하고, 같은 목 (2)(나) 중 “법 제6조”를 “『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』 제4조”로 한다.

별표 11 제1호차목 단서 중 “법 제4조·제5조·제6조·제32조”를 “법 제4조·제5조”로, “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, 제32조”를 “법 제4조·제5조”로 한다.

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호의2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1호가목5)의 위반행위란 중 “라목·바목”을 “바목”으로 한다.

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5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) 제3호가목 및 사목을 위반한경우	경고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
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

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7) 위반행위란 중 “제3호아목·자목”을 “제3호아목”으로 한다.

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3호 및 제11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1 제3호가목(2)·(5), 나목(2), 다목(2) 및 라목2)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2 제4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·부위명칭·등급·유통기한 및 100그램 당 가격과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자동판매기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.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고,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,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별표 13 제3호나목·자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4를 삭제한다.

별표 14의2 제4호 위반내용란 중 “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”을 “제33조제1항 또는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6호 위반내용란 중 “법 제6조제2항·제3항, 제21조제1항, 제22조제2항·제5항 또는 제24조”를 “법 제21조제1항, 제22조제2항·제5항, 제24조 또는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로 한다.

별표 16 제목 중 “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”를 “법 제31조제2항제1호”로 한다.

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사목을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6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중 “제3호가목·나목 또는 제4호가목·나목”을 “제3호가목”으로 한다.

③ 및 ④ 생략

